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6. 27 선고 2018나12820 판결 [계약금 상환청구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6. 27 선고 2018나1282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10149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최서연

피고, 피항소인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L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M, N의 소송수계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론 종결2019. 6. 13.

판결 선고2019. 6. 27.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10149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중 3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임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L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사.항 아래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아.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2018. 10. 3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9호)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공동관리인 M, N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2019. 6. 3.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3억 5,000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위 3억 5,0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제소합의라고 주장하는 제2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더라도, ①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2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부제소합의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② 부제소합의 시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의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5쪽 7행부터 7쪽 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제1매매계약의 잔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인 점, ②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제2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제2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는 상황을 원고가 예상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과는 무관한 점, ③ 이러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취지와 효력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억 5,000만 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임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아래 「3.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는 위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20행의 "위 계약금 지급일인"부터 9쪽 2행의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12쪽 10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8쪽 3행부터 12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금 지급일인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청구를 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위 2.항의 3억 5,0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위 3.항의 5,0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채동수

판사이상완